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취급기준 개정(안)

협동조합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방안을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근거

-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시행지침 변경 시행 알림」 (기업금융과-493, '18.6.4.)
- 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시행 알림」 (보증2018-629, '18.6.7.)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재보증비율	50%	60%
재보증 포괄약정 적용한도	2억원	한도 폐지

3. 시행일 : 2018. 6. 11.(월)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붙임 : 1.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취급기준 개정前전문 1부
3.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취급기준 개정後전문 1부. 끝.

★대리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442 (2018.06.14.) 접수 ()

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02-2174-5242 / 전송 02-3278-8117 / sm1122@seoulshinbo.co.kr / 부분공개(7)